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 개정 동향

박 종 철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특집]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신 외국법제정보는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5호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6호 기술·문화·산업간의 연계와 융합

제7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제8호 중소기업의 회생간소화

I. 처음에

II.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의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자의 범위
2. 주요 지원 사항
3. 지원 조치

III. 2012년의 개정 사항

1. 개정 배경
2. 개정 내용

IV. 마치며

1. 처음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더불어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 고용 창출 및 경제 다양화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정책은 상당부분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¹⁾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원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다각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이 들어선 정부도 주요 4가지 국정기조 가운데,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벤처중소기업, 신산업 시장개척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²⁾

일본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관심과 그 대책은 화두이다.³⁾ 최근 일본 경제는 환경적 문제·에너지 제약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인 과제를 부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피해 지역의 생활과 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도 더해져, 전국적인 경제 활동의 정체감을 가져왔다. 한편,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이어져 향후 이들 국가의 대폭적인 경제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⁴⁾

중소기업 분야의 측면에서는 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스스로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수는 장기적인 추세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총수에 대한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에 의한 경쟁 격화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해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투자에 의한 해외 진출 희망을 가진 중소기업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기업을 포함하여 해외 진출 지원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발생한 태국 대홍수로 현지에 진출해 있던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진출에 따른 위험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일본은 몇 년간의 자료수집·연구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1) 특히 중소기업청 소관법령(http://www.smba.go.kr/kr/public/own_law.do?mc=usr0001055) 참조.

2)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참조.

3)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은 <http://www.chusho.meti.go.jp/koukai/hourei/index.html> 참조.

4)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会議,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大綱, 平成 23年 6月 23日 策定, 1면.

5)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会議,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大綱, 平成 23年 6月 23日 策定, 2면.

촉진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하에서는 동 법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법 개정의 배경에 대한 일본 내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입법화의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전환에 따라” 1999년 3월 31일에 제정·공포되었으나, 이후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4월에 종래의 「중소기업경영혁신 지원법」,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사업창출촉진법」을 정리·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면개정 이후 현재까지 12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어 왔다.⁶⁾ 대부분은 타법 개정에 의한 일부개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본 법의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05년부터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지원과 경영혁신과 신사업 분야 개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직접적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중소기업자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제조·건설업·운수업 기타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1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도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6) 자세한 개정연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ttp://hourei.hounavi.jp/seitei/enkaku/H11/H11HO018.php>.

로 영위하는 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⑤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그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기업조합, ⑦ 협업조합, ⑧ 사업조합, 사업협동 소조합, 상공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가 본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1호).

2) 창업자

창업자란, 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자, ②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2개월 내에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한 당해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 ③ 회사이며, 자신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한 당해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자로 보아 본 법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법 제2조 제2호).

3) 신규 중소기업자

신규 중소기업자란 ① 사업 개시일 이후의 기간이 5년 미만의 개인, ② 설립일 이후의 기간이 5년 미만인 회사, ③ 사업 개시일 이후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개인 또는 설립의 날 이후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이며, 전년 또는 전 사업 년도 시험 연구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입 금액의 비율이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이다(법 제2조 제3호).

2. 주요 지원 사항

1) 경영혁신

이 법에서 경영혁신이란 사업자가 신사업활동을 추진하여 그 경영이 어느 정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항). 여기에서의 경영혁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업종에 의한 제약을 두지 않고 전업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② 단독 기업뿐만 아니라 임의 그룹 또는 조합 등 다양한 연계체제에서 경영혁신계획의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③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포함한 경영혁신계획이 요건으로 되어 있고, ④ 지방자치단체가 승인기업에 대하여 진척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신사업 활동

이 법에서는 신사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예시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활동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즉, ① 신상품 개발 또는 생산, ② 새로운 업무의 개발 또는 제공, ③ 상품의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방식 도입, ④ 용역의 새로운 제공 방법 도입 및 그 밖의 새로운 사업 활동을 신사업활동으로 보고 있다(법 제2조 제5호).

3. 지원 조치

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자 등”이라 한다)이 경영혁신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행정청에 제출하고, 그 경영혁신계획⁷⁾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각종의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제9조).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조치와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7) 경영혁신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첫째, 경영 혁신의 목표 둘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셋째, 경영혁신의 내용과 시기 넷째, 경영혁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다섯째, 조합 등이 경영 혁신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 기준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1) 우대조치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조치와 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 정지조치가 있다.

2) 보장·용자 우대조치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를 인정하여 신용보증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련 기관에 의한 저리용자와 고도화 용자 등 용자제도가 있다. 나아가 소규모 기업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자금 대부의 특례제도가 있다.

3) 투자·보조금 지원조치

투자처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펀드로부터의 투자와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로부터의 투자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과 관계되는 보조금 제도도 있다.

4) 판로개척 지원조치

우수한 신상품(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규성이 높고 구체적인 시장이 顯在化되지 않은 또는 광역적인 판로개척을 하고 싶으나 단독으로는 판로개척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정부가 중소기업 종합전 등을 기획하고 개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 목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방침)
- 제2장 창업 및 신규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의 촉진
 - 제4조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제5조 (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창업 등 홍보 업무)

제6조 (중소기업 투자 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제7조 (진단 및 지도)

제8조 (과세 특례)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타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촉진

제1절 경영혁신

제9조 (경영혁신 계획의 승인)

제10조 (경영혁신 계획의 변경 등)

제2절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제11조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의 인정)

제12조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의 변경 등)

제3절 지원조치

제13조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의 특례)

제14조 (중소기업 투자 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제15조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공고법의 특례)

제16조 (무역보험법의 특례)

제4절 지원체제의 정비

제17조 (인증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

제18조 (개선명령)

제19조 (인증의 취소)

제20조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제21조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인증경영혁신 등 지원기관 협력 업무)

제4장 중소기업의 신사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

제1절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활동 지원

제22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특정 보조금 등의 지출 기회 증대 노력)

제23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특정 보조금 등의 교부 방침의 작성 등)

제24조 (국가 등의 특정 보조금 등의 지출 실적 요약통지 및 공표)

제25조 (각 성, 각 청의 장 등에 대한 요청)

제26조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제27조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제2절 지역 산업 자원을 활용 해 실시하는 사업 환경의 정비

제28조 (사업환경 정비 구상)

제29조 (핵심지원 기관 인증)

제30조 (인증 핵심 지원기관의 업무 등)
 제31조 (중소기업자 등 설비 도입 자금 조성법에 관한 특례)
 제32조 (독립 행정법인 정보처리 추진기구가 실시하는 정보 관련 인재 육성 추진 업무)
 제33조 (정보처리 추진기구 및 신사업 지원 기관에 대한 능력 개발 사업으로 조성 및 지원)
 제34조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첨단기술 산학 연계 지역정비사업)
 제3절 잡칙
 제35조 (중소기업의 신사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제5장 잡칙
 제36조 (자금 확보)
 제37조 (조사, 지도 및 조언)
 제38조 (보고의 징수)
 제39조 (소관 행정청 등)
 제40조 (주무대신)
 제418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42조

III. 2012년의 개정 사항

1. 개정 배경

2010년 10월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회의」가 발족되었고, 동 지원회의는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해외전개지원대강」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원대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원대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8) 일본 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press/2011/06/20110623007/20110623007.html>) 참조.

9)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종합지원책 마련,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1. 참조.

1) 중소기업의 해외지원체제 구축

정부 및 각 기관들 간 광범위한 제휴 체제를 구축한다. 정부·지원기관·중소기업단체·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자나 농림 수산업자들의 해외사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협력·보완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한다.

지방에는 지방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운용하여 지원기관이 구체적으로 해외사업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일관된 지원을 실시한다. 동 협의회를 통해 각 지원기관들은 중소기업자나 농림수산업자들의 해외사업 실태나 요망사항 등에 대응할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 하에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외사업에 관한 일체화된 상담/지원체제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JETRO 등 해외거점이 재외 일본상공회의소 등과도 제휴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2) 중점과제

「중소기업 해외전개 지원회의」 발족이후 5,000여개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히어링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니즈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정보수집 및 제공

중소기업이 해외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장상황이나 상관습,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제공한다. 조직을 초월한 지원기록의 공유와 일관된 지원을 위해 지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상호 공유 및 일관된 지원을 실시한다.

(2) 마케팅

①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해외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의 상품개발이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 동향, 니즈, 상관행, 기준 등에 관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현지기업들이 수용하기 쉬운 상품개발

등을 지원한다.

② 안전성 및 안심도 제고 등 신뢰성 확보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 기업과의 상담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매개로 한 국제거래의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이후 이른바 루머피해대책, 공산품·식료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정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 내 검사체제의 내실화나 검사지원 등 루머피해대책 및 공산품 수출을 확실하게 지원한다.

특히 식료품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전하고 좋은 품질이라는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산 식료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③ 해외바이어 초청 및 국내 전시회에 출품

해외 유력 바이어 등을 초청함으로써 일본에서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각종 일본 내 전시회에 중소기업들의 출품을 지원한다.

④ 해외전시회 출품 및 해외미션 파견

해외 유력 전시회에 출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망한 해외시장에 미션을 파견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요망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⑤ 인터넷을 활용한 신규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기업과의 상담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매개로 한 국제거래의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3) 인재 육성·확보

중소기업 가운데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이나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나 연수 등을 강화한다.

수출이나 투자에 필요한 지식이나 유용한 네트워크, 기술 등을 겸비한 인재로서 해외비즈니스전문가(OB 인력), 외국인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자금조달

해외사업에서 중요한 과제인 금융부담을 절감해주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금융 관련 상담창

구를 확충하고 관계 기관들 간 지속적인 제휴를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토록 한다.

해외사업에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조건의 완화나 현지통화로의 자금조달이 용이토록 하는 동시에 리스크에 대한 보험기능을 강화한다.

(5) 무역투자환경 개선

많은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지역의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주고, 해외사업 관련 세무·노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 확보 등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유출방지매뉴얼을 작성한다. 무역·투자의 원활화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의 편리성 제고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현지 정부와의 관계구축을 지원한다.

2. 개정 내용

1) 개정 법률의 개요¹⁰⁾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①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자, 금융기관, 세무사 법인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인정하고,¹¹⁾ 중소기업에 의한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②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형 산업(쿨재팬으로 지역산업자원, 농업, 콘텐츠 산업 등)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책금융공고 및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주요 내용

(1) 자금조달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종래의 지원조치를 확대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즉 해외투자관계 보험의 보험관계이며, 타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관련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3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2억 엔”은 “4억 엔으로 하고, “4억 엔”

10) <http://www.chusho.meti.go.jp/keiei/kakushin/2012/download/0302Kaigai-kaisei-0.pdf> 중소기업청 참조

11)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분석,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을 인정.

은 “6억 엔”으로 한다(법 제13조 제5항).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상 외국인 투자 관련 보험(해외투자관계보험)의 보험 관계이며, 경영 혁신 관련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액의 상한이 개정되었다(법 제13조 제2항).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중소기업자 등이 승인된 경영혁신계획 따라 해외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기 자금의 차입에 따른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중소기업자가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관한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기 자금의 차입에 따른 채무에도 역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자 등이 그 외국 관계법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경영 혁신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 은행 등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외국 관계 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충당되는 단기 대출에 따른 채권(해외경영 혁신대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은행 등 또는 외국 금융 기관이 실시하는 해외 경영 혁신 대출 채권의 취득(해외경영혁신자금대출)은 무역보험법에 규정하는 해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자금대출)로 보는 무역보험법의 특례를 인정하였다(법 제16조 제1항).

(2) 지원체제의 정비

주무장관은 경영혁신 등 지원업무를 할 자로서, 기본 방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혁신 등 지원업무를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¹²⁾ 인증받은 “인증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은 ① 경영혁신 또는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원의 내용, 재무 내용 기타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② 사업계획의 책정·실시에 관한 지도·조언을 실시한다(법 제17조).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일반 사단법인 등은 경영혁신 등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한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에 규정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차입”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20조).

한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는 인증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의뢰에 따라 전문가의 파

12) 지원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경영혁신 등 지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4. 경영혁신 등 지원 업무 내용, 5. 경영 혁신 등 지원 업무 실시 체제, 6.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견 기타 경영 혁신 등 지원 업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

(3) 기타

주무장관은 공인 경영혁신 지원기관의 경영혁신 등 지원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증 경영혁신 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이러한 지원기관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무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9조).

IV. 마치며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동일본 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한 내수침체, 일본경제의 장기 저성장 등 많은 요소로 인해 일본 중소기업의 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은 거시적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세심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 과거의 경영혁신과 신사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가운데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수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해외시장을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유관기관들간의 협력 체제를 통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유관기관별 특화된 행동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중소기업)지원정책 이상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종합지원책 마련,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1.

일본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0.

<http://www.chusho.meti.go.jp/keici/kakushin/2012/0302Kaigai-kaisei.htm> 일본 중소기업청 법률정보 사이트.

<http://hourei.hounavi.jp/seitei/hou/H24/H24HO044.php> 일본 법네비법령검색 참조.